■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45호의2서식] <신설 2021. 10. 14.>

보내는 사람

받는 사람

# 예술·체육요원 교육 통지서

통지번호:_____

| | | |
|---|---|---|
| 교육과정명 | 복무기본교육 / 직무교육 | |
| 교육 대상자 | 성명 | 생년월일 |
| | 주소 | |
| | 복무분야(「예술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」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당분야 기재) | |
| 교육통지 | 교육일시(교육시간) | |
| | 교육장소 | |

「병역법」 제33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0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병무청 과 전화번호:

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

## 교육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

1.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.
2.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·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「병역법」 제33조10제2항제7호·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고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.
3.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   -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
   - 본인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(家事)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
   -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
   -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

※ 교육 연기 등 교육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청(지방병무청) 또는 문화체육관광부(한국문화예술위원회, 국민체육진흥공단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